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30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 의 자: 박대출·김영식·신원식

양금희 • 안병길 • 강대식

유두현 • 박성민 • 이종성

이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10,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 재산세액의 상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상 승함으로써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임.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3,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2조).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호 중 "100분의 105를"을 "100분의 101을"로, "100분의 105" 를 "100분의 10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0분의 110"을 각각 "1 00분의 10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00분의 130을"을 "100분의 105를"로, "100분의 130"을 "100분의 10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	
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	
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	
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	1
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	
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	
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	

- 세액 상당액의 <u>100분의 105를</u> 초과하는 경우에는 <u>100분의 1</u> 05에 해당하는 금액
-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등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 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100분의	101을
		<u>100</u> ਦੁ	<u> </u>
	<u>01</u>		
2			
		100년	<u></u> 의 1
	03		100
	분의 103		
3			
		-100분의	105를
	<u>105</u>		